

#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0. 6.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괴정4동은 현재 송곡, 괴정4동 경로당 2개소만 있어 타동에 비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
- 2003년 동순방 구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 노인들의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매입코자 함
- 매입대상 재산현황
  - ▷ 취득구분 : 건물, 토지
  - ▷ 위 치 : 괴정4동 1130 - 14
  - ▷ 건물매입(예정)연면적 : 49.59m<sup>2</sup> (15평) ▷ 지상1층
  - ▷ 토지매입(예정)연면적 : 229m<sup>2</sup> (69평)
  - ▷ 매입예상금액 : 183,200 천원(토지, 건물 포함)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법 제37조

## 2004년도 취득재산 목록(7-2)

○ 괴정4동 경로당(토지·건물) 매입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재 산 의 표 시				추정금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원소유자	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·성명	비 고
구 분	소재지	구 조	면 적(규모)						
토지·건물	괴정4동 1130-14	블록스라브	총면적 : 278.59 ○토지 : 229(69평) ○건물 : 49.59(15평) ▷ 지상 1층	183,200	2004. 3월	경로당 활용	곽재봉 (괴정4동1127-12)	사하구	